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일반현황

[1] 설립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

[2] 설립 경위

- 장애인체육업무 이관(복지정책과 → 체육청소년과, 2006. 4.)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창립이사회 개최 (2007. 1. 17.)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설립 인준 (대한장애인체육회, 2007. 4. 5.)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출범 (2007. 12. 5.)

[3] 주요 기능

기관운영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 직제 및 정원관리, 예산편성 및 조정·통제
-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육성 및 보급
-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체육복지

- 가맹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
- 실업팀 관리 및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관리 운영
- 특장버스 관리 운영

생활체육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대회개최 및 지원 등 사업 전개
-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사업 참가 및 주최·주관·후원·지원 등
- 특수학교,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향상과 통합체육 수업 보급
- 장애영유아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구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관리 등
- 시군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도감독
- 도내대회 개최 지원

전문체육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지원
- 도내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관리
-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및 학교체육 진흥 업무
-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 국제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 해외 도시 간 장애인체육 교류
- 전국대회 개최·참가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규약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규약

2007. 1. 17. 제정
2007. 12. 26. 개정
2008. 1. 24.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전면개정
2015. 7. 7. 개정
2019. 2. 27. 개정, 2019. 3. 8.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23. 6. 29. 개정, 2023. 7. 19.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23. 12. 26. 개정, 2024. 1. 16.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칭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Chungnam Para Sports Association(약칭 CNPAS)라 하며 CI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10. 12.>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제2조(목 적)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12.> <개정 2014. 5. 19.>

제3조(사무소)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두고 각 시·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제4조(사 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5. 19.>

1.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감독 <개정 2012. 2. 21.>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개정 2014. 5. 19.>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개정 2012. 2. 21.>
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8.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9. 특수학교 ·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개정 2014. 5. 19.>
10.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1.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2.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3. 전반적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자문
14. 장애인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15. 기타 장애인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 직) ①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를 가맹 승인하여야 하며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1. ‘정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하 “중앙 가맹단체”라 한다)로부터 우선 충청남도 지부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가맹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체육회가 가맹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③ 가맹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최고 집행기관으로 한다.<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④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⑤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⑥ 제2항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어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중앙 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충청남도 지부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⑦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신설 2024. 1. 16.>

제6조(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 5. 19.>

1.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3.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제7조(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4. 5. 19.>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3.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제8조(가맹 및 탈퇴) ①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의 가맹은 대의원총회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②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기존 제9조(탈퇴)를 한조에 명시>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중앙 가맹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1. 장애인체육회 규약(또는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8.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 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장애인체육회의 정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본회 가맹단체에 대해 ‘가맹단체 운영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게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4. 5. 19.>

1. 회 장 : 1인
2. 상임부회장 : 1인
3. 부회장 : 약간인
4. 이 사 : 33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개정 2023. 7. 19.>
5. 감 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 5. 19.> <삭제 2024. 1. 16.>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도지사를, 상임부회장은 체육담당 부지사가, 부회장 중 1인은 부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③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충청남도 체육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여야 하고, 충청남도 체육담당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 16.>

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⑦ 이사 정수에 5인 이상은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하되, 유형별 체육단체장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⑧ 이사에는 장애인선수 출신과 시·군장애인체육회의 (부)지부장을 각각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⑨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 16.>

제13조(임원의 사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당연직 임원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개정 2012. 2. 21.> <개정 2024. 1. 16.>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4. 정가맹단체 및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신설 2024. 1. 16.>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부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2. 21.>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24. 1. 16.>

⑤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4. 1. 16.>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개정 2014. 5. 19.>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부개정 2014. 5.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장애인체육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전기 4개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6조(가맹단체 및 시·군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시·군지부 임원에 대하여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19.>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지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및 장애인체육회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신설 2024. 1. 16.>

제17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정가맹단체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당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 총회 5일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부회장, 사무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정가맹단체의 가맹,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⑦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5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6조(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개정 2014. 5. 19.>

제27조(기 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의 지휘감독
9.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
10. 제규정의 제·개정
1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5. 19.>
- 12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4. 1. 16.>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 16.>

③ 당연직인 체육담당 부지사 및 부교육감 외에 의결권 위임은 할 수 없다. <신설 2024. 1. 16.>

제29조(의결권의 위임) ① 당연직인 체육담당 부지사 및 부교육감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

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5. 7. 7.> <개정 2024. 1. 16.>

1. 이사회 회의차수 및 회의일자
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안건 및 의견
3. 관계공무원의 성명 <개정 2024.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서면은 당해 회의록의 말미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제30조(소 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 16.>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연장자 순), 사무처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삭제 2024. 1. 16.>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24. 1. 16.>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신설 2024. 1. 16.>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4. 1. 16.>
2. 제1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2. 2. 21.>

제32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 제33조(각종 위원회)**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1. 생활체육위원회 <폐지 2022. 2. 28.>
 2. 전문체육위원회 <폐지 2022. 2. 28.>
 3. 기타 각종 위원회
- ② 제1항 각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2. 21.>

제 7 장 가맹단체

- 제34조(기 관)** 가맹단체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체를 조직운영에 관한 필
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5. 19.>

제 8 장 시·군지회 <개정 2024. 1. 16.>

- 제35조(지회설치)**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 ② 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제 9 장 자산 및 회계

- 제36조(자 산)**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9.>
1. 장애인체육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자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8조(재산관리)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 2014. 5. 19.>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 5. 1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장애인체육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제41조(기금 및 적립금) ①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9.>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2조(회계연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가맹단체 등의 회계감사)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시·군 지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제 10 장 사무처

제44조(사무처)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8. 1. 24.> <개정 2014. 5. 19.>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1. 16.>

③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 및 장애인체육회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겸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④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⑤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4. 1. 16.>

제45조(사무처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19. 3. 8.>

③ 사무처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삭제 2024. 1. 16.>

제46조(사무처 직제와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7조(경영공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개정 2014. 5. 19.>

제 11 장 보 칙

제48조(표창 및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4. 5. 19.>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9조(규약개정) ①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19.> <개정 2024. 1. 16.>

② 규약의 변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 16.>

제50조(규정 제·개정 및 해석) ① 장애인체육회는 시도지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② 제1항 이외에 당해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신설 2024. 1. 16.>

③ 시도지회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된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개정이 있을 때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시도지회 운영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우선하며,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장애인체육회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 16.>

제51조(제한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도지회 운영규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제52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산하 시군장애인체육회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제53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의결 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약 중 미비한 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했을 경우, 임원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부 칙(201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제36조(사무처장의 직무 및 임기)와 관련하여 규약 개정 전 사무처장의 임기는(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16.〉

1. 시도지회 상징물 병행 사용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CHUNGNAM PARA SPORTS ASSOCIATION



2. 기본형 엠블럼



3. 대회 행사용 엠블럼 (시도지회 상징물 병행)



※ 규격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정규격을 준용한다.